

부산지방법원 2015. 1. 15 선고 2013가단220704 판결 [구상금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부산신용보증재단

피고A

변론 종결2014. 11. 6.

판결 선고2015. 1. 15.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0. 5.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 가.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부산진등기소 2012. 10. 11. 접수 제57055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 나.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2012. 10. 11. 접수 제52015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주문 제2의 가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와 동일한 것으로 특정하고 있으나 이는 등기부 기재상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바로잡아 주문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정정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계약 및 대위변제

1) 원고는 2012. 2. 3. B의 보증의뢰에 따라 B가 주식회사 국제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음으로써 부담할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에 대해 보증금액 17,000,000원, 보증기한 2017. 2. 2.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2) B는 2012. 2. 3. 위 신용보증에 따라 위 은행으로부터 17,000,000원을 대출받았는데, 같은 해 10. 4. 위 대출금의 이자를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신용보증사고를 일으켰고, 원고는 2013. 4. 26. 위 은행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18,179,893원(= 대출원금 17,000,000원 + 약정이자 1,179,89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B의 이 사건 증여

B는 2012. 10. 5. 처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일괄하여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라고 한다), 같은 달 11. 별지 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주문 제2의 가항 기재의, 별지 목록 제4, 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주문 제2의 나항 기재의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B와 피고의 협의이혼

B와 피고는 2012. 10. 8. 부산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의 이혼의사 확인절차를 거쳐 2012. 11. 7. 협의이혼하였다.

라. B의 재산상태

B는 이 사건 증여 당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이 사건 부동산	129,536,950	(주)국제저축은행 대출금 채무(이 사건 구상금 관련)	17,000,000
----------	-------------	----------------------------------	------------

이 사건 부동산	129,536,950	(주)국제저축은행 대출금 채무(이 사건 구상금 관련)	17,000,000
경남 합천군 C 전 1,021m ² 중 1/3 지분	3,675,600	범일2동새마을금고 대출금 채무	44,000,000
동양생명-(무)수호천사 2002 종신보험 해약환급금 채권	27,144,624원	지인들에 대한 차용금 채무1) 2014. 6. 17.자 피고 준비서면 참조	200,000,000
합계	160,357,174	합계	261,000,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8호증, 을 제6호증, 이 법원의 부산광역시 동구청장, 남구청장, 법원행정처, 국토교통부,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범일2동 새마을금고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D에 대한 각 시가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증여 이후 원고의 대위변제에 의하여 비로소 구체적으로 확정되었지만, 그 이전에 이미 구상금 채권의 기초가 되는 신용보증계약이 성립되어 있었고, 이 사건 증여 전날 이미 이자연체에 따른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함으로써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구상금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 후 원고가 보증책임을 이행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의 구상금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다21245 판결 등 참조).

나. 사해행위의 성립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B가 자신의 부동산 중 대부분의 자산비율을 차지하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일괄하여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다른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행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B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다른 일반 채권자들을 해할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채무자인 B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의 주장 및 판단

피고는 B와의 협의이혼에 따라 위자료 명목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이전받은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혼에 따른 위자료의 지급이라 하더라도 채무초과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자신의 부동산 중 대부분의 자산가치를 가지는 이 사건 부동산(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가 129,536,950원인데 반하여 나머지 1개의 부동산은 그 시가가 3,675,600원에 불과하다)을 일괄하여 무상 양도하는 행위는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다카24762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와 B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강기남

별지

1) 2014. 6. 17.자 피고 준비서면 참조